



고소작업대 내 이동 중 떨어짐



재해개요

2024. 06. 00.(목) 14:25경 경남 창원시 소재 000 사업장에서 재해자를 포함한 2명이 탑승 후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에서 작업대의 보조 발판을 연장하기 위해 이동 중,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

발생원인

1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을 다른 물체로 고정하여 개방된 상태로 이동

-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이 적정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나 출입문을 다른 물체로 고정하여 개방된 상태로 작업 중 떨어짐

2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사용 시 안전대 미착용

- 작업자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어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, 미착용

예방대책

1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에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않도록 관리 조치

-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출입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

2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사용 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 조치

-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모·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 철저

※ 본 P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